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자체감사 —

2022. 6.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6건	4	2	3	13,601	0	0	0	0
1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기록물 관리 부적정	1							
2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공가사용 부적정	1		1	114				
3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기준 미준수		1						
4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숲가꾸기 사업 추진 부적정		1						
5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임도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1		1	3,991				
6	산림환경연구원 서 부 지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1	9,496				

2. 처분요구일람표

1.	기록물 관리 부적정 (시정)	1
2.	공가사용 부적정 (시정)	3
3.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기준 미준수 (주의)	5
4.	숲가꾸기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7
5.	임도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9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1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록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한 후 정리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처리과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기록물을 생산 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활용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거나, 부득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이관시기가 10년을 초과하는 2011년 이전 생산 기록물은 관할 기록관(자치행정과)으로 이관하여야 했는데도 1962년에 생산된 ‘사방사업 설계시행 총괄표’를 비롯한 1970 및 1980년대 사방사업 관련 기록물 등 이관시기가 경과한 기록물 200여권을 서고에 보관하는 등 이관시기가 초과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기록관(자치행정과)과 협의하여 이관 시기가 경과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가사용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소속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6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건강검진 등 공가 사유가 발생한 소속 직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를 허가 받은 직원은 공가 사유에 부합하도록 공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소속 직원 지방○○○○ AAA는 2020. 9. 24.과 같은 해 9. 28. 외출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10.16. 건강검진의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해당액 114,870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기준 미준수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2020.1.1.시행)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비목별 적용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비로 지출해야할 문화재 발굴용역비를 시설비가 아닌 시설부대비로 지출하였다.

[표]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기준 미준수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앞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도유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294호) 제20조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고, 그 외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독자와 감리원은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 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 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다르게 작업원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50% 이상 미충족 숲가꾸기사업 현황

- 내용 생략 -

그 결과 계약 시 자격증 보유 참여자의 비율과 실제 작업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었고,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자격자가 전체 작업 인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이 작업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임도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2019년 임도신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사업현황

- 이하 생략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 등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9년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콘크리트포장 거푸집(116.8㎡)이 산출내역서에 합판거푸집(6회)로 반영되어 있으나, 도급자가 시공 편의를 위하여 합판거푸집(6회)보다 저렴한 유로폼(간단)으로 시공하였는데도 353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고,

‘2019년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 설치를 위한 거푸집(620㎡)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각각 합판(6회)와 합판(4회)로 반영되어 있으나, 도급자가 합성수지(PE)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적정한 단가가 아닌 유로폼(보통)으로 설계변경하는데도 3,638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어야 할 3,991천원(제경비 포함)이 부당하게 지급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과다 집행된 사업비 3,991천원(제경비 포함)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 하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는 ‘201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사업현황

-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도 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2]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정하고 있다.

[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 이하 생략 -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표2]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등의 목적이 포함된 건설기계 유도자(신호자)의 인건비,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비,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지원제 행사비¹⁾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은

- 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96천원(제경비 포함)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회수 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9.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포함하여 식대70인분, 기념품 120개 등이 과다하게 지급됨